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29
----------	-------

발의연월일 : 2026. 4. 27.

발 의 자 : 윤재옥 · 이인선 · 김기웅
백종현 · 이주영 · 권영진
최은석 · 김승수 · 정점식
김선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란 위치정보 및 기상·소음 정보 등 도심항공교통에 필요한 정보로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데이터 기반 인프라임.

따라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 유지가 UAM 운항 안전 확보와 사업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로서 매우 중요함.

이에 현행법은 관계기관이 공간정보 변경사항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보된 내용을 실제 공간정보에 즉시 반영하는 규정은 임의 규정에 머물러 있어 신속한 정보 최신화 및 서비스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간정보 갱신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갱신 의무’를 명확히 법률에 신설해 도심항공교통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미

래 항공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18조 제4항).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부터 시설물 및 장애물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갱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18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u> <u>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부터</u> <u>시설물 및 장애물 변경사항</u> <u>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u> <u>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갱신</u> <u>하여야 한다.</u>